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발명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특허협력조약(PCT) 조약규칙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0.~8.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에 발명자를 추가(제1항 본문에 따른 발명자의 추가는 특허출원의 특허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다만, 발명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를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사전송장치**”를 각각 “**팩스**”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인은 그**”를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로, “**때와**”를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대표자의 경우 성명)·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20.3(b)(ii) 및 20.5(d)**”를 “**20.3(b)(ii), 20.5(d) 또는 20.5bis(d)**”로, “**20.5(b) 또는 20.5(c)**”를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5(c)**”를 “**20.5(c) 또는 20.5bis(c)**”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제출인란 중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제출인 구분】**”을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으로, “**【주소】**”를 “**【주소】**”, “**【거주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 중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다목 내지 사목을 각각 라목 내지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및 바목(종전의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가목1)나)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으로 한다.

다. **【국적】**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이때,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는 국적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난을 삭제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제출인이 국내 주소가 있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4)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바. 【우편번호】 , 【주소】 및 【거주국】

-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 및 “KR” 을 각각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란에 적고(국가명 및 우편번호 포함),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주소】란에 적은 주소의 국가명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거주국】란에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 2) 【주소】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거주국】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적을 수 있으며, 【주소】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  
번호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1)[예] 중 “**역삼동 545번지**”를 “**테헤란로 131**”로, “**신림동 1542-1번지**”를 “**신림로15길 40**”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1)(나)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를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가목(4)[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6호나목(1) 중 “**영문표기**”,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란”을 “**영문표기**” , **【국적**】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및 **【거주국**】 란”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10호나목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의 기재요령 제4호가목1) 중 “**우선권증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 부여**”를 “**우선권증명**”으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http://www.patent.go.kr))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수령”으로 적습니다. 부여된 접근코드는 특허로([www.patent.go.kr](http://www.paten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

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1) 중 “한정하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나목[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신청이유】 발명자(고안자)의 정정, 추가

【정정(추가)내용】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1231-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2호 중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예] 중 “○○(시) ○○구 ○○동 ○○번지

○○호”를 “○○시 ○○구 ○○로 ○○”로, “○○BeonJi ○○Ho ○○Do  
ng ○○Gu ○○(Si)”를 “○○, ○○Ro, ○○Gu, ○○Si”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가목(2)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란 중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  
호가목, 나목 중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하고, 같은 목 [예]  
중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로, “주소”를 “주소, 이메일  
주소(선임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다목[예]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다목[예]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신고구분                                         | 내 용                                                                                                              | 관련 규정                                  |
|----------------------------------------------|------------------------------------------------------------------------------------------------------------------|----------------------------------------|
| 출원인 변경, 출원인 겸<br>발명자(고안자) 변경,<br>발명자(고안자) 변경 |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br>안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br>또는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를 변<br>경하려는 경우[출원인과 발명자<br>(고안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br>말합니다] | 「특허법 시행규칙」 제82조 및<b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출원인 정보변경, 출원인<br>겸 발명자(고안자) 정보<br>변경,        |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br>안자)의 성명이나 명칭·주소·국<br>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 「특허법 시행규칙」 제81조 및<br>「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                                   |                                                                                                                                      |  |
|-----------------------------------|--------------------------------------------------------------------------------------------------------------------------------------|--|
| 대리인 정보변경, 대표자 정보변경, 발명자(고안자) 정보변경 | 경우이거나,<br>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대표자의 경우 성명)·주소·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이거나,<br>발명자(고안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를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출원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를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출원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를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또는 발명자(고안자)]”로, “발명자(고안자)”를 “발명자(고안자)의 명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로 하며, 같은 목 (1)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중 “출원인[대표자,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관련”을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발명자(고안자)]관련”으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6호가목(2) 중 “발명자(고안자),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로 한다.

- (1) 【변경항목】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적, 거주국, 서명, 인감 중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① 출원인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에 성명(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적, 거주국, 서명, 인감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②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에 성명이나 명칭(대표자의 경우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명, 인감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③ 발명자(고안자)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에 성명, 주소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2) 【변경전】란과 【변경후】란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이때, 【변경항목】란에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은 경우에는 다음 예1과 같이 적습니다. 한편, 【변경항목】란에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적 또는 거주국을 적은 경우에는 【변경항목】란의 다음 행에 【성명(명칭)】란을 추가하여 변경의 대상이 되는 출원인[출원인 겸 발명자(고안자), 대리인, 대표자, 또는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되 다음 예2와 같이 적습니다.

[예1]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예2] 【변경항목】 주소

【성명(명칭)】 HONG, Kildong

【변경전】 100, Cheongsang-ro,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변경후】 200, Cheongsang-ro,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3) 2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변경내용】란을 추가하여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예] 【변경내용】

【변경항목】 성명

【변경전】 HONG, Kildong

【변경후】 HONG, Gildong

【변경내용】

【변경항목】 주소

【성명】 HONG, Kildong

【변경전】 123, Dunsan-dong,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변경후】 150, Dunsan-dong, Seo-gu, Daejeon, 12345,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9호가목(2)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중 “**【국제특허출원언어】**”를 “**【국제출원언어】**”로, “**【발명(고안)자】**”를 “**【발명자(고안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제특허출원”을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실용신안법」**”을 “**「실용신안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 중 “**【국제특허출원언어】란**”을 “**【국제출원언어】란**”으로, “**명세서**”를 각각 “발명(고안)의 설명”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명세서**”를 “발명(고안)의 설명”으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7호 중 “**【발명(고안)자】란**”을 “**【발명자(고안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서열목록**”, **【서열개수】** 및 **【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서열목록**” 및 **【서열개수】**란”으로 하며, 같은 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12호가목(1) 중 “**발명**”을 “발명(고안)”으로 하며, 같은 목 (2)를 삭제하고, 같은 목 (3)을 (2)로 한다.

####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주소】**, ( **【주소의 영문표기】** ), **【거주국】**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다.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22. 1. 1.

(2) 【서열개수】란에는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의 전자파일 1부”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별지 제58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제특허출원”을 “국제출원(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고,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 중 “【발명(고안)자】란”을 “【발명자(고안자)】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1) 중 “명세서·청구의 범위”를 “발명(고안)의 설명·청구범위”로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국적】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 【주소】 , ( 【주소의 영문표기】 ), 【거주국】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 PCT

## POWER OF ATTORNEY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Rule 90.4)

The undersigned applicant(s) *(Names should be indicated as they appear in the [Request Form \(PCT/RO/101\)](#)):*

hereby appoints(appoint) the following person as :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o represent the undersigned before ☐ all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nly

- ☐ the Authority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only: \_\_\_\_\_  
(please indicate the Authority(ies)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 ☐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nly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identified below:

**Title of the invention:**

**Applicant's or agent's file reference:**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if already available):**

filed with the following Office \_\_\_\_\_ as receiving Office

and to make or receive payments on behalf of the undersigned.

**Signature of the applicant(s)** (*where there are several applicants, each of them must sign;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e request or this power*):

Date : \_\_\_\_\_

Form PCT/Model of power of attorney(for a given international application)(January 2009)

[ 예 ]

# PCT

##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several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Rule 90.5)

The undersigned person(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hereby [appoint\(s\)](#) the following person as:

☐ agent

☐ common representative

### Name and address

*(Family name followed by given name; for a legal entity, full official designation. The address must include postal code and name of country.)*

to represent the undersigned before

☐ all the compet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nly

☐ the Authority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only: \_\_\_\_\_

*(please indicate the Authority(ies) specified for supplementary search)*

☐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only

in connection with any and all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the undersigned with the following Office:

\_\_\_\_\_ as receiving Office

and to make or receive payments on behalf of the undersigned.

**Signature(s)** *(where there are several persons, each of them must sign; next to each signature, indicate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and the capacity in which the person signs, if such capacity is not obvious from reading this power):*

Date : \_\_\_\_\_

Form PCT/model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several international applications)(January 2009)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u></p> <p><u>②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정서 또는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서식을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u></p> | <p><u>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특허결정 이후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를 잘못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u></p> <p><u>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에 발명자를 추가(제1항 본문에 따른 발명자의 추가는 특허출원의 특허결정 전까지만 해당한다)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u></p> |

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

2.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  
신청서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  
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  
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  
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  
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  
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  
명서 1통

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  
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 전  
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 1통(다만, 발명자의 서명  
이나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  
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

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정(추가)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명서 1통

2.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

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확인서류 1통

제33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 특허거절결정의 불복심판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1. ~ 3. (생략)

제76조(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특허청장에게 국제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삭 제>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  
-----.  
1. ~ 3. (현행과 같음)  
제76조(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

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성명이나 명

-----  
-----  
-----  
-----  
----- 팩스 -----  
-----.

② -----  
----- 팩스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  
-----  
---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

|                                                                                                                                                                                                                                                                                                                                                                                                                               |                                                                                                                                                                                                                                                                                                                                                                                                                                         |
|-------------------------------------------------------------------------------------------------------------------------------------------------------------------------------------------------------------------------------------------------------------------------------------------------------------------------------------------------------------------------------------------------------------------------------|-----------------------------------------------------------------------------------------------------------------------------------------------------------------------------------------------------------------------------------------------------------------------------------------------------------------------------------------------------------------------------------------------------------------------------------------|
| <p>칭·주소·국적·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u>때와</u>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제101조(절차의 보정) ① (생략)</p> <p>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보정서 3통</p> <p>2. (생략)</p> <p>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p> <p>① 특허청장은 조약규칙 <u>20.3(b)(ii)</u> 및 <u>20.5(d)</u>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p> | <p><u>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u></p> <p>----- <u>때, 대리인 또는 대</u></p> <p><u>표자의 성명이나 명칭(대표자의</u></p> <p><u>경우 성명)·주소·서명 또는</u></p> <p><u>인감을 변경한 때 및</u> -----</p> <p>-----.</p> <p>1.·2. (현행과 같음)</p> <p>제101조(절차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1. ---- 1통</p> <p>2. (현행과 같음)</p> <p>제114조의2(국제출원일의 특례)</p> <p>① ----- <u>20.3(b)(ii), 20.5(d) 또는 20.5bis(d)</u></p> <p>-----</p> <p>-----</p> |
|-------------------------------------------------------------------------------------------------------------------------------------------------------------------------------------------------------------------------------------------------------------------------------------------------------------------------------------------------------------------------------------------------------------------------------|-----------------------------------------------------------------------------------------------------------------------------------------------------------------------------------------------------------------------------------------------------------------------------------------------------------------------------------------------------------------------------------------------------------------------------------------|

조약규칙 20.3(b)(i), 20.5(b)  
또는 20.5(c)에 따른 국제출원일  
 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  
 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  
 규칙 20.5(c)에 따라 그 국제특  
 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  
 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  
 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  
 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  
 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  
(c)-----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20.5(c) 또는 20.5bis(c)---  
 -----  
 -----  
 -----  
 -----  
 -----  
 -----  
 -----  
 -----.

야 한다.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